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35
----------	---------

제출연월일: 2021년 3월 일
제출자: 안전교통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정비
- 상위 법령과 조문 불일치로 인한 인용 조항 변경 및 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추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변경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안 제2조의2)

- 존속기한 변경(2021.6.30. → 2026.6.30.)

나. 상위법 인용 조항 변경(안 제7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5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입법예고(2021. 01. 27. ~ 02. 16.)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 심사대상 미 해당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91조”를 “「도로법」 제91조”로 한다.

제2조의2 본문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과된”을 “지난”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운영상”을 “운용상”으로, “만료전이라도”를 “만료 전이라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3호 중 “수행하는데”를 “수행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위촉직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의3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예산범위내”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개시전”을 “개시 전”으로,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지방재정법」 제54조”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입·세출결산안”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한다.

제8조 중 “수입,지출”을 “수입, 지출”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지방자치법」 제142조</u>----- ----- ----- ----- -----.</p>
<p>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p> <p>2. (생략)</p>	<p>제2조(기금의 재원) ----- ----- ----- -----.</p> <p>1. 「도로법」 제91조----- ----- -----</p> <p>2. (현행과 같음)</p>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1년 6월 30일</u>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u>경과된</u>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p>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u>2026년 6월 30일</u>----- ----- ----- <u>지난</u> ----- ----- -----</p>

⑤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2. (생략)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② (생략)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5.9.30.)

제6조의3(수당) 심의회 심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조 신설 2017.4.5.)

⑤-----

1. 2. (현행과 같음)

3. -----
----- 수행하는 데 -----

⑥ 위촉직 위원-----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 -----

제6조의3(수당)-----
----- 위원 중-----
----- 예산의 범위-----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결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개시 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②-----

----- 세입
· 세출 예산안 -----

--.

제8조(준용) -----
-----수입, 지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도로과장 강 원 기

(담당: 시설7급 이영훈 / ☎ 2600-6408)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정비
- 상위 법령과 조문 불일치로 인한 인용 조항 변경 및 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추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변경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안 제2조의2)
 - 존속기한 변경(2021.6.30. → 2026.6.30.)
- 상위법 인용 조항 변경(안 제7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5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조문에서 인용한 상위법이 조문의 내용과 불일치하여 상위법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21 -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이경민
입안주무부서	도로과	통보(조치)일		2021. 2. 8.	
관련조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서울강서001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도로과	
	담당자명	이영훈	전화번호 02-2600-640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2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로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상위 법령에 맞추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2월 15일

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최은영/02-2600-6762)

도로과장 귀하